

선 람	기관장



제4호(호외) 2022. 2. 3.(목)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2-208호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압법예고 ...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발행 : 광양시 ▶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323, 행정2713)

광양시 공고 제2022-208호

「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입법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2월 3일
광양시장

1. 조례안명 :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출범시기가 달라서 읍면동별 위원 위촉 등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 읍면동에 대하여 임기개시일 및 만료일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임기개시일 및 임기만료일 통일적 운영
(제17조 제8항 신설)
 -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일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

제17조(구성 등) ①~ ⑦ 생략

⑧ 위원회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, 임기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. 위원회의 위촉이 지체되어 1월 1일 이후에 위촉된 경우에도 당해 위원회의 임기는 1월 1일 시작된 것으로 본다.

-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칙 규정
 - 2022. 12. 31. 임기가 종료되는 6개 면동(옥곡면, 골약동, 중마동, 광영동, 태인동, 금호동) 주민자치위원 임기연장 특례 규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특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입법예고기간 : 2022. 2. 3. ~ 2. 23.(20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시 총무과(전화 : 061-797-2238)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가. 제출서식 : 붙임 참고

나. 제출방법 : 일반우편, 전자우편 또는 팩스

다. 제출하실 곳

- 일반우편 : 광양시 시청로 33(중동), 광양시청 총무과
- 전자우편 : natio@korea.kr
- 팩 스 : 061-797-2579

붙임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조례 제 호

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, 임기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. 위원의 위촉이 지체되어 1월 1일 이후에 위촉된 경우에도 당해 위원의 임기는 1월 1일 시작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특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구성 등) ① ~ ⑦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7조(구성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</u> <u>일로 하고, 임기만료일은 12월</u> <u>31일로 한다. 위원의 위촉이 지</u> <u>체되어 1월 1일 이후에 위촉된</u> <u>경우에도 당해 위원의 임기는 1</u> <u>월 1일 시작된 것으로 본다.</u>